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방심위 심의대상에서 인터넷신문 등 제외 〉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22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방심위 심의대상에서 인터넷신문·뉴스서비스 제외(안 제21조제4호) ...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훈기의원 등 22인

나. 발 의 일 : 2025. 3. 4.

다. 회 부 일 : 2025. 3.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규정하고 있음. 동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의 법령을 근거로 인터넷신문사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의 보도 내용에 대해 심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언론에 대한 과도한 통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여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방심위 심의대상에서 인터넷신문·뉴스서비스 제외(안 제21조제4호)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직무에 대해 규정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1조제4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방심위 심의대상에서 인터넷신문사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u><단서 신설></u>	4. ----- ----- ----- ----- -----.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5. ~ 9. (생략)	5. ~ 9. (현행과 같음)

나. 검토 의견

□ 방심위의 심의대상은 크게 방송심의와 통신심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법 제21조, 제24조, 제25조와 그 하위규정 등을 통해 통신심의의 범위와 제재조치 등이 구체화되고 있음.

- 통신심의와 관련해 방심위는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¹⁾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 등의 유통에 대한 심의를 진행함.²⁾
- 방심위는 법 제24조³⁾에 따라 통신심의의 기준 등을 담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제정·공표하고 있으며, 심의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고 있음.⁴⁾

1)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5.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 6.~9. (생략)

2)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①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생략)

3) 제24조(심의규정의 제정·공표 등) 심의위원회는 제21조에 정한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공표한다.

1.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4)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5조(시정요구) ① 위원회는 제12조제2호에 따른 결정을 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제4호 및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 개정안의 입법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23년 10월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와 관련하여 인터넷 기사 홈페이지 게시글, 유튜브 채널 동영상 등 2건을 통신심의소위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음.
- 방통위나 방심위는 심의근거로 법 제21조제4호에 근거하여 방심위는 “전기통신회선(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심의할 수 있다는 것을 주로 제시하였음.⁵⁾
- 그러나 인터넷 신문사업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에 따른 규율대상으로, 기사 등의 보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정정·반론·추후 보도의 청구대상이 되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또는 시정권고가 이루어지는 식으로 현행 법체계가 정비되어 있다는 점, 인터넷신문사에 대한 통신심의는 언론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인터넷신문기사는 통신심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왔으며,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통신심의의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외부의 비판이 있었음.⁶⁾⁷⁾

관리·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없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자료, 「방통심의위, 인터넷 언론사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까지 심의 확대」, 2023.9.21.,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설명자료, 「뉴스타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는 KBS의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2023.11.3.
- 6) 한국기자협회, 「‘가짜뉴스 국감’된 방통위·방심위 국감」, 2023.10.10., KBS 뉴스, 「인터넷 언

□ 개정안은 위와 같은 사회적 논란을 감안하여 제21조제4호 단서를 신설해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는 방심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신심의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한정하고 언론의 자유 등을 충실히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선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은 “신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해당하는 정보”를 통신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해당 정의는 다음과 같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5.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현재 인터넷신문사업자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경우 기사

론 ‘뉴스타파’는 방심위 심의대상일까?」, 2023.11.5., 미디어스, 「방심위 평직원 150명 “가짜뉴스 센터 인사발령 하지말라”」, 2023.11.14.

- 7) 참고로, 방심위는 해당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 시정요구 등의 의결이 아닌, 뉴스타파가 등록된 서울시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검토를 요청하기로 의결하였음.

등에 대해 인터넷 댓글이나 게시판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게시판이나 인터넷기사에 대한 댓글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의 경우에도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통신심의의 제외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음.

- 이와 같은 점과 통신심의의 대상에서 보도를 제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면, 제외 대상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언론보도⁸⁾”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동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등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므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과 해당 정보에는 기사 이외에 이용자 댓글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신심의 제한범위를 신중히 논의하여 구체화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이나 인터넷기사의

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14. “사실적 주장”이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15. “언론보도”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댓글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사항까지 통신심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심의공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의 범위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226